

# 소스코드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신청서

채 권 자 주식회사 알파피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8, 5층 534호(서초동, BNK디지털타워)  
대표자 사내이사 조재현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11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담당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김송경

채 무 자 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  
부산 연제구 연제로 30, 105동 오피스 7, 8, 9층 9021호(연산동, 시청역  
비스타동원)  
대표이사 이재철

목적물의가액: 금 100,000,000 원

피보전권리의요지: 계약에 따른 개발 결과물 인도청구권

## 신청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개발 결과물을 인도하라.
  -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 시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목 차 —

<b>1. 당사자들의 지위</b>	<b>2</b>
<b>2. 이 사건의 경위</b>	<b>2</b>
가.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3
1)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저작권 귀속 (계약서 제8조 제1항): 채권자	3
2) 개발 결과물에 포함된 소스코드의 사용권 등 (계약서 제8조 제2항): 채권자3	
3)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의무 (계약서 제10조 제2항): 채무자	4
나. 채무자의 계약 위반 및 계약 해지 경위	4
1) 개발 지연 및 부당한 계약 변경 요구	4
2) 소스코드의 인질화 및 계약상 의무의 정면 부인	5
3) 책임 전가 및 일방적인 연락 두절	6
4) 채권자의 이행 추구하고 채무자의 악의적인 이행 거절	6
5) 소결	6
<b>3. 피보전권리의 존재</b>	<b>7</b>
가.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권(제8호 제1항)	7
나. 소스코드 등의 사용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제8조 제2항)	8
다. 관련 법리	8
라. 소결	10
<b>4. 보전의 필요성</b>	<b>11</b>
가.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 및 급박한 위험의 발생	11
1) 사업 기회의 상실 및 막대한 금전적 손해	12

2) 채무자의 악의적인 지연 전략으로 인한 피해의 가속화	13
3) 소스코드 등의 훼손, 멸실, 유출의 위험	14
나. 단행적 가처분의 필요성	14
5. 합의관할	15
6. 결론	15

# 열람용

## 소스코드 인도단행가처분 신청

채 권 자      주식회사 알파피플 (Alpha People Inc.)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8, 5층 534호(서초동)  
 대표자 사내이사 조재현  
 채권자의 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김송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11층(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전화) 02-532-3483, 팩스) 02-532-3486

채 무 자      주식회사 테브올컴퍼니  
 부산 연제구 연제로 30, 105동 오피스 7, 8, 9층 9021호(연산  
 동, 시청역 비스타 동원)  
 대표이사 이재철

피보전권리의 요지: 계약에 따른 개발 결과물 인도청구권

###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개발 결과물을 인도하라.
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 시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 청 원 인

### 1.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 주식회사 알파피플(이하 '채권자 회사'라 합니다)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인플루언서 굿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소갑 제1호증 채권자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인플루언서 기반의 신규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앱')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이하 '채무자 회사'라 합니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 개발 업체입니다(소갑 제2호증 채무자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채권자는 2025. 5. 12. 채무자와 이 사건 앱의 백엔드 및 인프라 개발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외주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2. 이 사건의 경위

### 가.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1)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저작권 귀속 (계약서 제8조 제1항): 채권자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은 "을(채무자)이 본 계약에 따라 갑(채권자)을 위하여 개발한 소스코드, 설계, 데이터베이스, API 문서 등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관련 지식재산권은 갑(채권자)에게 귀속된다."라고 명시하여, 개발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채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소갑 제3호증 외주용역계약서).

<소갑 제3호증 외주용역계약서 중 발췌>

<p><b>제8조 (소스코드 및 지식재산권)</b></p> <p>1. 개발 결과물의 귀속: 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갑을 위하여 개발한 소스코드, 설계, 데이터베이스, API 문서 등 일체의 산출물(이하 "개발 결과물")에 대한 <b>소유권 및 관련 지식재산권은 갑에게 귀속된다.</b></p>
--

2) 소스코드 등의 사용권 (계약서 제8조 제2항): 채권자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은 "을(채무자)이 자신의 다른 서비스에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소스코드, 라이브러리 등이 본 개발 결과물에 포함된 경우, 을의 소스코드 등에 대한 소유권 및 관련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유보"되지만, "갑(채권자)은 해당 을의 소스코드 등에 대하여 본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개발 결과물을 사용하기 위한 영구적이고 비독점적인 사용권(라이선스)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갑 제3호증 외주용역계약서 중 발췌>

2. 을의 공통 코드 사용 및 권리: 다만, **을이 자신의 다른 서비스에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소스코드, 라이브러리 등(시기 불분, 이하 "을의 공통 코드")** 이 본 개발 결과물에 포함된 경우, 을의 공통 코드에 대한 소유권 및 관련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유보된다. 갑은 해당 을의 공통 코드에 대하여 본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개발 결과물을 **사용하기 위한 영구적이고 비독점적인 사용권(라이선스)**을 가진다.

이는 채무자가 일부 소스코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채권자는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소스코드를 포함한 개발 결과물 전체를 사용하고 인도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소갑 제3호증 외주용역계약서).

3)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의무 (계약서 제10조 제2항): 채무자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은 "본 계약이 ... 상호 합의 해지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을(채무자)은 ... 갑(채권자)의 후속 개발 진행에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문서, 소스코드, 운영 매뉴얼 등을 포함한 인수인계 자료를 제출**한다."라고 규정하여, 계약 종료 시 채무자의 포괄적이고 성실한 인수인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소갑 제3호증 외주용역계약서).

<소갑 제3호증 외주용역계약서 중 발췌>

**제10조 (인수인계)**

1. 계약 만료 시 갑과 을은 우선적으로 계약 연장 여부를 협의한다.
2.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본 계약이 제2조 제3항에 따른 을의 해지나 상호 합의 해지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을은 대가 산정 기간 만료일 또는 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비상주 방식으로 갑의 후속 개발 진행에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문서, 소스코드, 운영 매뉴얼 등을 포함한 인수인계 자료를 제출한다.**

나. 채무자의 계약 위반 및 계약 해지 경위

1) 개발 지연 및 부당한 계약 변경 요구

채무자는 2025년 하반기부터 백엔드 개발 업무를 현저히 지연시켜 오던 중, 2026. 1. 5.경 돌연 자신의 투자 유지 등을 이유로 본건 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제시한 변경안은 ① 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고, ② 수익 분배 비율을 기존 5%에서 8%로 상향하며, ③ 계약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등 채권자로서는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과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채권자를 압박하였습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이행기일을 도과한 후에 이르러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 없는 과도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이 이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소스코드 등의 인질화 및 계약상 의무의 정면 부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원 계약에 따른 소스코드 등 인도를 전제로 한 계약 해지에 동의하자, 채무자는 2026. 1. 6. 면담 자리에서 "본인이 개발한 것이니 인도할 수 없다", "소송을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은 소요될 것"이라는 취지의 폭언을 하며 계약상 소유권 이전 의무를 정면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이는 서비스 런칭 일정이 임박한 채권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소스코드 등을 볼모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명백한 위법 행위였습니다.

### 3) 책임 전가 및 일방적인 연락 두절

이후 채무자는 2026. 1. 13.경, 갑자기 채권자의 기획 지연 등을 이유로 들며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채권자에게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유권 이전 대신 '사용권'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의 해지합의서를 송부하며, 48시간 내에 날인하지 않을 경우 인수인계 및 사용권 부여조차 거부하겠다고 통보한 뒤 채권자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 4) 채권자의 이행 촉구와 채무자의 악의적인 이행 거절

채권자는 2026. 1. 16. 내용증명을 통해 본건 계약에 따른 개발 결과물 일체의 인도를 공식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소갑 제4호증 2026. 1. 16.자 채권자 발송 내용 증명). 그러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인수인계 범위를 대폭 축소한 합의안을 제시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제안하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채권자의 거듭된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채무자는, 최종 답변 기한인 2026. 2. 2. 소스코드 인도 의무에 대한 답변 대신 채권자를 사기 및 기망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등 본건의 본질과 무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5)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는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소스코드 등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명백한 계약상 의무를 악의적으로 외면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서비스 출시 지연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실을 담보 삼아 부당한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며,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한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용해 인도 의무를 고의로 해태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서비스 운영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고자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3. 피보전권리의 존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소유권 귀속), 제8조 제2항(사용권) 및 제10조 제2항(인수인계 의무)에 근거한 '개발 결과물 인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권(제8호 제1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이 채권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계약 제8조 제1항). 또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채무자는 후속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소스코드 등 일체의 개발 결과물을 채권자에게 인수인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계약 제10조 제2항).

따라서 채권자는 소유권, 저작권에 근거한 개발 결과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2026. 1. 5. 채권자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당한 계약 변경을 요구하며 사실상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고(소갑 제5호증 채권자-채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중 1쪽), 이와 같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 변경 요구와 일방적인 이행 거절은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544조).

채권자는 2026. 1. 11.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고, 채무자에게 도달한 바, 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소갑 제5호증 채권자-채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중 3쪽). 따라서 채무자는 위 계약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개발 결과물 일체를 인도할 명시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 나. 사용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제8조 제2항) 등

가사 채무자가 개발 결과물 중 일부가 자신의 다른 서비스에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소스코드 등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자신에게 유보된 경우라도,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은 채권자가 해당 소스코드 등에 대하여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 개발 결과물을 사용하기 위한 '영구적이고 비독점적인 사용권(라이선스)'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일부 소스코드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이 없더라도 영구적인 사용권에 근거하여 소스코드 등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아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자는 후속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소스코드 등 일체의 개발 결과물을 비롯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인수인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제10조 제2항),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채무자는 위 계약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개발 결과물 일체를 인도할 명시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 다. 관련 법리

법원 역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에서 '결과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발사는 발주사에 대하여 소스코드 등 결과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7나2059124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7나2059124 판결**

가. 소스코드 제공의무의 존부(적극)

(중략)

2) 판단

나) 이 사건 계약의 성격과 소스코드의 제공

C의 제안요청서, 피고의 구축제안서, C시스템개발용역계약,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C의 베트남 현지 영업에 최적화된 C시스템개발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고는 분석/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총괄책임자 F 및 개발총괄 책임자 G의 지휘 아래 코딩작업 등의 개발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L, N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더하여 보면, C시스템개발용역계약 및 이 사건 계약은 시스템구매계약이 아니라 **시스템개발용역계약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개발자는 발주사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한다.** 피고가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다투면서 들고 있는 을 제8 내지 10,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C의 제안요청서 및 C시스템개발용역계약,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용역을 납품 및 설치하고, 원고는 피고가 수행하는 개발용역을 포함하여 C시스템개발용역을 C에게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가 수행한 개발용역은 원고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C에게 제공된다. **피고가 개발 및 설치한 용역을 포함하여 개발 및 설치된 용역의 소유권은 C에게 있다. 이는 C이 C시스템개발용역의 산출물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피고의 코딩작업으로 생긴 소스코드를 비롯한 산출물의 제공도 포함된다.**

(중략)

3) 소결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개발업무로 생긴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특히 통상적인 개발 용역 계약의 산출물에는 소스코드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에 소스코드 제공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6가단 5176683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6가단5176683, 2017가단5072191 판결**

나. 판단

1) 피고가 중도금 지급을 위한 중간산출물 제공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중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붙임 5>에 2016. 4. 30.까지 이행할 것으로 정한 API 연동규격과 보안모듈의 개발을 2016. 5. 25.까지도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스코드의 경우 이 사건 계약서 <붙임 3>에 상시적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였는지 여부

(중략)

따라서 가사 피고가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 작업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부당한 이유를 들어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최종산출물의 교부를 거부한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채권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 있고, ② 설령 일부 소스코드가 채무자의 소유라 하더라도 채권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영구적인 사용권을 가지므로 그 사용권의 원활한 행사를 위해 인도를 구할

수 있으며, ③ 제10조 제2항은 계약 종료 시 후속 개발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스코드 등 일체의 결과물을 지체 없이 인도해야 할 채무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는바, 계약상의 인수인계 의무는 그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에서 소스코드는 단순한 결과물을 넘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이에 대한 권리 귀속 및 인도 약정은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계약상의 명문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자의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소스코드 등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하여 개발 결과물 일체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인 '개발 결과물 인도 청구권'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4. 보전의 필요성

본 건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으로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으로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의 집행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여 그 보전의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 가.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 및 급박한 위험의 발생

채권자가 입고 있는 손해는 단순히 채무자가 소스코드 등을 점유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소극적 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이 사건 앱의 출시를 위해 필수적인 후속 개발, 테스트, 배포 등의 업무를 전혀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손해**입니다.

1) 사업 기회의 상실 및 막대한 금전적 손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소스코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입니다. 채무자가 소스코드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채권자는 후속 개발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정된 서비스 런칭은 무기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소유권자가 소스코드를 인도받지 못할 경우, 시스템의 장애 처리, 변경, 개선 등 정상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소스코드를 소유권 행사에 필요한 핵심적인 산출물로 보고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2. 12. 1. 선고 2020나 25797(본소),2020나25803(반소) 판결 참조).

**대구고등법원 2022. 12. 1. 선고 2020나25797, 2020나25803 판결**  
②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고(민법 제 211조), 이러한 소유권은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1차 시스템 관련 소스코드는 이 사건 1차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수정 작업을 하거나 시스템 변경, 개선 사항의 시행 등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바**, 이러한 소스코드 없이 원고가 이 사건 1차 시스템을 직접 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특히 이 사건 1차 협약이 해지되거나 피고

가 폐업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1차 시스템의 유지보수업무를 더 이상 담당하지 않게 될 경우 이 사건 1차 시스템 관련 소스코드가 없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1차 시스템에 관한 위와 같은 장애 처리, 시스템 변경 또는 개선 등을 하기가 더욱 곤란하게 된다).

특히 급변하는 IT 시장의 특성상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적기 출시는 사업 성패의 관건인바, 현재의 지연은 단순한 시간의 손실을 넘어 시장 선점 기회 의 완전한 박탈로 이어집니다. 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만으로는 결코 전보될 수 없는 치명적인 손해입니다. 또한, 채권자는 개발 지연 중에도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막대한 고정 비용을 매일 지출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의 규모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 2) 채무자의 악의적인 지연 전략으로 인한 피해의 가속화

채무자는 채권자의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고 런칭 일정이 촉박하다는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소스코드를 볼모로 잡고 시간을 끄는 소위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정당한 인도 요구에 대해 '과거 합의안 아카이빙'과 같은 본질과 무관한 절차를 제안하며 이행을 회피해 왔 습니다.

심지어 채무자는 최종 이행 촉구에 대해 '사기, 기망' 등 근거 없는 무고성 주장을 하며 형사 고발을 운운하는 등 본건의 쟁점을 흐리고 채권자를 협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불성실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만약 본안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경우 채무자는 소송 지연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 사이 채권자는 자금 고갈로 인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3) 소스코드 등의 훼손, 멸실, 유출의 위험

소스코드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특성상 점유자인 채무자에 의해 언제든지 수정, 삭제, 은닉될 수 있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계약의 명문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비상식적인 소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안 판결 전 소스코드 등을 훼손하거나 경쟁 사업에 유용하여 그 가치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일단 소스코드 등이 변질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향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나. 단행적 가처분의 필요성

본 건에서 구하는 소스코드 인도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만족을 얻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 또는 '단행적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단행적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채권자의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인 현 상황은 본안 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본 건과 같이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특히 그 특정물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인 경우에는 현상유지를 명하는 소극적 가처분만으로는 채권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입는 손해는 단순히 채무자가 소스코드를 점유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넘어, 채권자가 이를 이용하여 후속 개발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극적인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소스코드의 인도를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 즉 인도단행가처분을 통하여 채권자가 후속 개발을 즉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채권자의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실효적인 수단입니다.

법원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저작권 귀속 약정에 따른 소스코드 인도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7나2059124 판결).



### 5. 합의관할

본 건 관할은 이 사건 계약 제14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합니다.

### 6. 결론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채권자는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소유권 귀속), 제8조 제2항(사용권) 및 제10조(인수인계 의무)에 따라 개발 결과물인 소스코드 등을 인도받을 명백한 '개발 결과물 인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는 단순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소극적 상태를 넘어,

채권자의 사업 출시 일정이 임박한 약점을 악용하여 소스코드를 볼모로 부당한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고의적으로 인도를 지연시키며, 급기야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형사 고발을 운운하는 등 극히 악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사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앱 출시가 무기한 지연되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시장 선점 기회의 상실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악의적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의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인 현 상황에서, 본안 판결의 승패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인도단행가처분 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두루 살피시어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서류

- 소갑 제1호증: 채권자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소갑 제2호증: 채무자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소갑 제3호증: 외주용역계약서  
소갑 제4호증: 2026. 1. 16.자 채권자 발송 내용증명  
소갑 제5호증: 채권자-채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 첨부서류

### 1. 소송위임장

2026. 2. 13.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김송경

[별지]

개발 결과물 목록

1.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개발한 소스코드, 설계, 데이터베이스, API 문서
  -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체 Git 저장소 (GitHub, GitLab, Bitbucket 등 실제 사용 중인 저장소 기준)
  - 전체 커밋 이력 및 브랜치 구조
  - 인도 시점 기준 빌드 및 실행이 가능한 상태의 소스코드
  - 환경 설정 정보 (환경 변수, 설정 파일, 의존성 정보 등)
  - 서버·인프라 구성 정보 (배포 구조, 연동 서비스, 실행 방식 포함)
  - 서비스 실행 및 배포 방법에 관한 설명 자료
  
2. 채무자가 자신의 다른 서비스에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소스코드, 라이브러리
  
3. 후속 개발 진행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문서, 소스코드, 운영 매뉴얼.
  - 소스코드 구조 및 주요 로직 설명
  - 시스템 아키텍처 및 데이터 흐름 설명

끝.

## 별지 목록

1. 첨부 별지와 같습니다.

열람용